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승진심사 시 가점 평정 관련 조문 삭제 및 정비(제15조, 안 제16조제1항, 안 제17조제2항, 별표3, 별표4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경찰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었던 가산점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33986호, 2023. 12. 19. 공포, 2026. 7. 1. 시행)됨에 따라 가산점과 관련된 내용 정비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가점 평정을 명시한 조문 및 별표 삭제(제15조, 별표3, 별표4)
- 가산점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6조제1항, 안 제17조제2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승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